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<http://www.kma.org>] / 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박상아 [6575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033호

시행일자 2026. 9. 1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
의견조회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-725호(2026.9.14.)
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을 2026. 9. 28.(월)까지 행정예고 하였는바,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. 9. 22.(화) 까지 의협 보험정책급여팀(kma6350@naver.com 메일송신 요망)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- 비타민[정밀분광-질량분석] 세부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
- 나567 면역조직(세포) 화학검사 Level II 수가산정방법 급여기준 확대
- 나583나(1) IDH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
-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기준 신설
-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[1일당] 급여기준 신설

#붙임 : 공고문, 일부개정안, 검토의견서(양식)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